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1113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#### 2. 주요내용

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'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(안 제11조, 별표2)

- 1)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

- 2)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(제11조 제1항),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(별표2)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계획적·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
- 3)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(주택건설공급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- 팩스 : 044-201-5684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전화 044-201-3365, 33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